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5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위성곤・박지원・한정애

서영교 • 허 영 • 진성준

박희승 · 문대림 · 이소영

강유정 · 김한규 · 정진욱

윤건영 · 오세희 · 조인철

박수현 • 양부남 • 박지혜

김성환 · 임미애 · 위성락

민형배 • 박정현 의원

(2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수열에너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1톤당 52.7원에서 0.0063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할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 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생산·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 고자 함(안 제3조제34호 및 제38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수열에너지"란 지하수·해수(海水)·하수·하천수를 열원으로 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로 공급되는 원수(原水)나 정수(淨水) 등이 수열에너지 생산의 열원으로 이용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4. "수열에너지"란 지하수·해
	수(海水)・하수・하천수를
	열원으로 하여 생산된 에너
	지를 말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 ~ ④ (생	제38조(공급규정)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로
	공급되는 원수(原水)나 정수(淨
	水) 등이 수열에너지 생산의
	열원으로 이용되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돗물의 요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